

5월 18일(수) 조간 (인터넷 5. 17.(화) 12:00 이후)



보도자료

▶ 근로개선정책과장 권태성
사무관 최대술

- ▶ 2011. 5. 17. 배포
- ▶ 총 3 쪽 (사진없음)

TEL : 2110-7392, 010-7390-7688
E-MAIL : cs4349@moel.go.kr
F A X : 02-503-6692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(보도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최저임금, 위반·의심사례 2483개소 적발

- ▶ 고용노동부, 「(최저임금) 4320 지킴이」 통해 지난 6주간 집중 활동
- ▶ 위반업종은 편의점·주유소(1,408개소), PC방·당구장(574개소), 숙박·음식업(426개소) 등으로 나타남

-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6주간 편의점, PC방 등을 대상으로 「(최저임금) 4320 지킴이*」 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,

* 4320 지킴이: 최저임금(시간당 4,320원) 준수 여부를 살피는 시민·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감시 요원으로 위반 사례를 집중 감시·적발(47개 지방관서)

- 위반·의심사업장 2,483개소(피해근로자 2,933명)를 적발했다고 밝혔다.

- 이는 지난해 「(최저임금) 4110 지킴이」 적발 실적(630개소)*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으며,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「4320 지킴이」 선발·관리, 감시·활동지역 확대(7개시→전국) 등으로 나타났다.

* 4110 지킴이: '10.10.4~12.20 기간 중 155명 활동, 630개소 적발(편의점 583건, 패스트푸드점 27건, 주유소 6건, 기타 14건)

- 최저임금 위반(의심) 사업장은 도·소매업(편의점, 주유소 등) 1,408개소(56.7%), 여가관련 서비스업(PC방, 당구장 등) 574개소(23.1%), 숙박·음식점 426개소(17.2%) 등으로 나타났다.
-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사례 「cyber 신고센터」*를 설치, 일제 신고기간(3.28~5.6)도 함께 운영하였으며
 - 최저임금 위반사례 283건(도·소매업 85건, 여가관련서비스업 51건, 숙박·음식점 49건 등)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.
 - *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, 가족, 일반시민 등 3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게 조치
- 한편, 5.18(목)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은 업종(편의점, 패스트푸드점, PC방, 주유소 등)의 사업주와 관련업종별 단체(협회)와 간담회를 개최* 하여 최저임금 준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.
 - *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사업주 간담회: 5.18(수) 11:30, 팔레스호텔, 편의점 등 최저임금 및 산업안전조치 위반사례가 많은 업종의 사업주 및 단체(협의) 임원
- 아울러, 이번 「(최저임금) 4320 지킴이」 사업 및 「cyber 신고센터」 운영기간 중에 적발 또는 신고된 범위반(의심)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~8월 중 '최저임금 정기감독'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.
 - 특히 정기 감독에서 고의·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사법처리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.
-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(☎: 국번없이 1350)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「cyber 신고센터」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개선지도과)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.

<참고1>

□ 「(최저임금) 4320 지킴이」 위반(의심)사례 적발실적

(단위: 개소, 명)

계	숙박·음식업	도·소매업 (주유소, 편의점 등)	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(청소·용역 등)	여가관련 서비스업 (PC방, 당구장 등)	기타 개인 서비스업 (자동차수리, 미용 등)	기타 업종
2,483	426	1,408	8	574	16	51

* 「(최저임금)4320 지킴이」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사업장 실태조사·홍보 13,894개소 실시

<참고2>

□ 사업장 지도감독 결과

(단위 : 개소, 건)

구 분	점검 업체수	위반 업체수	최저임금법 위반건수				조치내역			
			계	6조	11조	기타	계	시정 조치	사법 처리	과태료
2010년	20,151	8,025	8,577	736	7,840	1	8,577	8,574	3	-
2009년	25,505	14,896	15,625	1,002	14,618	5	15,625	15,618	6	1
2008년	24,915	9,965	10,813	1,820	8,993	2	10,813	10,805	8	-
2007년	20,224	4,072	4,612	2,119	2,491	2	4,612	4,603	8	1
2006년	17,732	3,111	3,440	2,132	1,284	24	3,440	3,417	21	2

※ 위반조항 및 벌칙 - 6조 :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(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),

11조 : 최저임금 등 미주지(1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
기타 : 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, 서류 미제출 등(1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
※ 지도감독은 예방감독의 차원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등 개선토록 조치하고 불이행시 사법처리 등 조치